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30
------	-----

2022. 9. 2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9.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정수용)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을 일부 정비하고, 학교 운영 관련 주요 분야에 관한 사항을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부설연구기관의 규모와 역할에 따라 설치 근거를 달리 정하여 연구기관별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시대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대상 중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4호).

나.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보고 대상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다. 부설연구원과 부설연구소의 설치 근거를 각각 규칙과 학칙에 두도록 분리하여 규정하고, 부설연구원과 부설연구소를 ‘부설 연구기관’으로 통칭함(안 제7조제2항, 제3항, 제4항).

라. 누락된 단어 추가 등 문구 정비(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제2항제1호)

3.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산하 부설연구기관의 역할에 따라 설치 근거를 분리 규정하여 다양한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됨.

나. 주요 개정사항

(1) 교원임용에 관한 심의사항 삭제(안 제3조제1항제4호)

-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중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교육공무원법」은 공립대학의 경우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되, 조례로 공립대학의 장에게 임용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55조)¹⁾.

1)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②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이에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²⁾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립대 총장(이하 ‘총장’)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음.
-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조³⁾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 인사위원회에서 교원 임용과 인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 그동안 전임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경우가 없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위임 규정과 상충되므로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에서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함.

(2) 학교 운영에 관한 보고 대상 신설(안 제3조제2항)

- 안 제3조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 예산·결산,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 그 밖에 시장 또는 총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보고 대상으로 신설함.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직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2항 및 제5항	서울시립 대학교총장

3)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1.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
3. 그 밖에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조정 외에 보고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역할 확대를 도모하고 공립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음.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내용 >

구분	내용
심의·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의 중·장기 발전방향 ▶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 또는 총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보고 대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및 결산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 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 그 밖에 시장 또는 총장이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 운영위원회는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연구역량의 향상을 목적으로 학교 전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 위원장(서울시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서울시 관계 공무원, 시의회 의원, 대학교 교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최근 5년간 운영위원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심의·의결 안건보다 현안보고 위주로 서면 1건, 대면 2건 개최에 불과해 학교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연도	심의방법	주요내용	심의결과
2019	서면심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발전 실행계획(안) 보고	원안의결
2022	대면심의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조성계획 ·서울시립대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운영계획 ·대학자율혁신계획 수립 추진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시립대 총장선출 계획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계획 ·캠퍼스 환경개선을 위한 스마트강의동 건립계획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개선계획	심의·의결 안건없음 (현안보고)
2022	대면심의	·21년 결산보고 ·21년 장학금 지급현황 ·22년 학칙 개정사항 ·시립대 총장 선출계획 ·대학원 정원조정 추진계획 ·학생 취업 창업 확대 방안 ·자체수입금 부족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23년도 대학회계 예산편성 방향 및 중점사업 ·시립대 은평캠퍼스 설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심의·의결 안건없음 (현안보고)

- 반면에, 교육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평의원회와 재정 위원회를 비롯해 교무위원회와 같은 대학 자체 기구들이 학교운영, 재정계획, 학칙 등을 심의·의결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 보고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보다는 학교의 자율 운영에 지나친 개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학교 전체적인 발전 방향과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능에 국한하여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의사결정기구 현황>

구분	근거규정	심의내용
평의원회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구성원 권익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제의 ▶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재정위원회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회계직원 총 정원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계속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교무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학부, 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 ▶ 학칙,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 ▶ 입학, 수료 및 졸업 ▶ 고사 및 시험 ▶ 학생지도, 장학 및 후생 ▶ 대학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 연구비, 장학금 등 제보조금의 지급 ▶ 예산 및 결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의 중·장기 발전방향 ▶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 또는 총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부설연구기관 근거 규정 분리(안 제7조제2항 ~ 제3항)

- 안 제7조제2항은 부설연구원의 설치목적으로 ‘시정연구’를

추가하여 서울시 정책연구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공립대학의 설립목적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정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안 제7조제3항은 부설연구기관을 부설연구원과 부설연구소로 구분하여, 학문 및 시정연구를 위해 필요한 ‘부설연구원’은 규칙으로 두고, 그 외 학교의 학문연구를 위한 ‘부설연구소’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⁴⁾

<서울시립대학교 산하 부설연구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연구원 (3)	·도시과학연구원 ·공학연구원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연구소 (12)	·조세재정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양자정보처리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도시홍수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산업경영연구소 ·서울학연구소 ·법학연구소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9조(부설연구소) 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연구소를 둔다.

1. 도시과학연구원
2. 공학연구원
3.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② 그 외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그러나 부설연구기관은 재원구조, 설립목적, 구성형태, 연구내용, 활동 실적 등이 각기 다른데 단지 명칭에 따라 근거 규정을 분리할만한 입법 실익이 없으며 시민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다. 종합의견

-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조례상의 심의·자문기구이므로, 운영의 활성화와 역할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법령에서 정한 교내 자체 기구의 심의·의결 사항 외에 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는 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0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을 일부 정비하고, 학교 운영 관련 주요 분야에 관한 사항을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역할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 부설연구기관의 규모와 역할에 따라 설치 근거를 달리 정함으로써, 연구기관별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시대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대상 중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4호)
- 나.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보고 대상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 다. 부설연구원과 부설연구소의 설치 근거를 각각 규칙과 학칙에 두도록 분리하여 규정하고, 부설연구원과 부설연구소를 ‘부설 연구기관’으로 통칭함(안 제7조제2항, 제3항, 제4항)
- 라. 누락된 단어 추가 등 문구 정비(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3) 입법예고 (2022. 6. 9.~2022. 6. 29.) 결과: 별첨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은 대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총장이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설기관”을 “부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문연구”를 “학문 및 시정연구”로,

“부설연구소는”을 “부설연구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규정된 부설연구원을 제외한 대학교의 학문연구를 위한 부설연구소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부설연구소의”를 “부설연구기관의”로, “부설연구소에”를 “부설연구기관에”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대학”을 “대학 및 대학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p> <p>①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p> <p>1. ~ 3. (생략)</p> <p>4. <u>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u></p> <p>5. (생략)</p> <p><u><신설></u></p> <p>②·③ (생략)</p> <p>제7조(<u>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u>) ① 대학교에 다음의 <u>부설기관</u>을 둔다.</p> <p>1. ~ 12. (생략)</p>	<p>제3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p> <p>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4.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u>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은 대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1. <u>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u></p> <p>2. <u>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3. <u>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u></p> <p>4. <u>그 밖에 시장 또는 총장이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u></p> <p>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제7조(<u>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u>) ① ----- <u>부속기관</u>-----.</p> <p>1. ~ 12. (현행과 같음)</p>

② 학문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부설연구소는 규칙으로 둘 수 있다.

<신 설>

③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맡기고,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8조(감독 및 승인) ① (생략)

②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학과설치 및 폐지
2. 3. (생략)

② 학문 및 시정연구----- 부설연구원은 -----.

③ 제2항에 규정된 부설연구원을 제외한 대학교의 학문연구를 위한 부설연구소는 학칙으로 정한다.

④ ----- 부설연구기관의 -----

-- 부설연구기관에 -----

-----.

제8조(감독 및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대학 및 대학원-----
2. 3.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부설연구기관(부설연구원, 부설연구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이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담당관 구성하(02-2133-7764)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p>서울시립대학교</p>	<p>○ 제3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제1항에 심의·조정 대상으로 추가된 제3호~제7호 삭제 요구</p> <p>– 제3호~제7호는 법률에 따라 재정위원회 등 교내 자체기구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함</p> <p>○ 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제2항에 부설연구원의 목적을 “시정 지원 연구 및 정책협력과 학문연구” 로 규정한 내용 삭제 요구</p> <p>– 시립대의 존립 목적이 서울시 정책 및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연구만을 해야 하는 기관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市 정책 집행기관으로 전락할 우려 존재</p> <p>○ 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제5항에 총장이 매년 부설연구기관을 평가하고 정비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삭제 요구</p> <p>– 대학의 자율성 및 부설연구기관의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학칙 등</p>	<p>○ 일부반영</p> <p>–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과 보고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p> <p>< 심의·조정 대상 ></p> <p>▶ 대학교의 중·장기 발전방향</p> <p>▶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p> <p>▶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p> <p>▶ 그 밖에 시장 또는 총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p> <p>< 보고 대상 ></p> <p>▶ 예산 및 결산</p> <p>▶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p> <p>▶ 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p> <p>▶ 그 밖에 시장 또는 총장이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p> <p>○ 일부반영</p> <p>– “시정 지원 연구 및 정책협력과 학문연구” 를 “학문 및 시정 연구” 로 수정</p> <p>○ 반영</p> <p>– 규정 삭제</p>

	학내 규정으로 정하고 필요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제1항 제7호와 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제5항 삭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31조 제4항(대학의 자율성) 및 제22조 제1항(학문의 자유)에 위배 	상동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개정조례안 모든 항목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하는 안건을 추가하고, 총장의 의무사항을 확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함 	상동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대상 확대(제3조 제1항 제3호~제7호)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발생 등이 우려되며, 운영위원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입법 진행 요청 	상동